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2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1(수) 14:00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검토보고

### 1. 제안 경과

-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23일 김 부 유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됨

### 2. 제안 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안 제4조)
- 자율방범대 임무 (안 제5조)
- 자율방범대 지원 등 (안 제8조)
-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안 제9조)
- 자율방범대 포상 (안 제10조)

### 4.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 5. 검토 의견

- 가.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나. 자율방범대 구성은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 [개정 2080.9.18 예규 제 87호]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에 따라 구성하며, 대원의 선임은 같은규칙 제7조(자율방범대원등의 선임)에 의하여 자율방범연합대장이 선임하며, 대원의 해촉은 같은규칙 제8조(해촉)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 후 해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다. 자율방범대 교육은 같은규칙 제12조(교육)에 따라 경찰서장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종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내 자율방범대는 2012년 6월말 연기군 지역 24개대와 장기면과 부용면 자율방범대 각 2개대가 편성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는 현재 28개(남 14대, 여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2012년 하반기 지원액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19,710천원, 차량유지비 11,000천원, 상해보험료 14,200천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2,500천원, 야간순찰 등 장비 구입비 1,000천원등 총 48,410천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조직 및 구성)에 조직과 구성을 명시하였으나, 자율방범대 관리운영은 충남지방경찰청 소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2. 7. 20일부터 8. 9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2-23호)

#### ※ 첨부사항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1 부.
-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1 부.
-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대비표 1 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2-23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역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함.

##### 2.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임무(제4조)
-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제5조)
- 지도 및 감독(제6조)
- 포상(제7조)

##### 3. 의견제출 및 문의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 재난방재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http://www.sejong.go.kr))의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신흥리 123)

세종시청 재난방재과 우339-705

- 전화 : 044-211-4833 / 팩스 : 044-211-4819 재난방재과 비상민방위담당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제정 2008.9.18 예규 제87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하는 조직(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이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주민협력 방법체제의 구축은 물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이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범죄예방 등 지역 방범활동을 하는 동·면(경찰서 지구대·파출소)단위의 자율적인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라 함은 경찰서 관내 각 동·면단위 자율방범대의 연합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라 함은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으로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의 운영·임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종류 및 명칭】**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통일한다.

1. 지구대(파출소)단위의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지역명칭)자율방범대”라 칭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는 “○○경찰서(또는 지역명칭) 자율방범연합대”라 칭한다.

###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 5 조 【자율방범대의 구성】**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직·구성한다.

1. 자율방범대는 1개 지구대(파출소) 관내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편성 운영한다. 단, 치안여건·파출소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치안센터 단위 복수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대장, 부대장, 총무의 임원선출 및 적정인원의 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자율방범대의 통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장을 위원으로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합대장, 총무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방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의 개최, 지역방법대책

追  
3

등 지역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6 조 【자격요건】**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관내 거주자로서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3. 경찰대상업소 경영자 및 그와 관련이 있지 아니한 자
4.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파렴치한 자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
5. 기타 지역경찰관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자율방범대원 등의 선임】** ① 자율방범대원의 선임은 전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해 선임한다.

1.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중 자율방범대장 또는 리·통장 등의 추천으로 지역경찰관서장의 신원확인 후 자율방범연합대장이 선임한다.
2. 자율방범대장은 선임 예정자를 자율방범연합대장의 검토를 거쳐 지역경찰관서장에게 적격여부를 심사 의뢰한다.
3. 지역경찰관서장은 전 제6조의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자율방범연합대장에게 통보한다.
4.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적격여부 심사결과 등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판단·선임하고, 연합대장 명의의 위촉장(별표 1)과 신분증(별표 2)을 발급하되, 위촉장은 신분증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경찰서장 또는 지역경찰관서장 명의의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5.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발급대장(별표 3)을 작성·비치한다.

② 임원의 선임은 자율방범대원의 5분의 1 및 지역경찰관서장의 추천으로 전 자율방범대원의 투표에 의해 선임한다.

③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임원은 각 위원의 투표에 의해 선임한다.

**제 8 조 【해 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은 지역경찰관서장과 협의 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타 관내로 퇴거하였을 때
2. 전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및 무단으로 근무를 월 2회이상 결락하였을 때
4. 자율방범대원으로 민원야기나 위신실추 등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해촉된 대원은 전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분증을 즉시 자율방범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대원의 임무】** 자율방범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3. 경찰과 협동 순찰근무, 「목」배치 근무 및 신고출동
4.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追)  
3

## 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협조

### 제 3 장 근무방법 등

**제10조 【근무방법】** ① 자율방범대장은 효율적인 근무수행을 위하여 대원의 근무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대장은 매월 초 근무조를 편성하여 별표 4호 서식에 의거 근무를 지정하고, 지역경찰관서장과 협조하여 대외관리 및 활동을 통제한다.
2.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는 대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경찰과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내 치안여건과 지역특수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범순찰 근무를 할 수 있다.
3. 자율방범대원은 필요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112 합동순찰, 주요 목배치 근무 등 경찰과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4. 근무 중 범인 등을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주요 취급사항의 경우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즉시 유·무선 보고 후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한다.
5. 자율방범대원의 근무는 주 1회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방범대장이 조정·운영한다.

② 자율방범대장은 지역치안 유지 목적에 의한 대원의 근무 및 운영에 관한 지역경찰관서장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당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지역경찰관서장은 효율적인 자율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시간은 야간 및 새벽시간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치안 수요 등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교 육】**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당일 근무대원에 대하여 근무배치 전 방범순찰요령, 범인체포요령, 준법정신, 대민활동요령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 및 대원에 대하여 각종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복장 및 장비】** 자율방범대의 복장 및 장비는 자치단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항과 같이 하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자, 완장만 착용한다. 단, 경찰과 유사한 복장 및 차량은 금지한다.

#### ① 복장

1. 상하의 : 간소복으로 하고, 색상 및 규격은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경찰복장과 유사한 복장은 금지한다.

2. 모 자 : 흑색(또는 청색) 기동모(모표 : 별표 5)를 착용한다.

3. 완장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의 완장(별표 6)을 왼쪽 팔에 고정·착용한다.

4. 신발 : 운동화 또는 기동화를 착용한다.

② 방범활동 중에는 방범조끼(야광밴드), 정적, 손전등 및 방범봉 등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追)  
3

③ 차량(자율방범대 자체보유 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자율방범대의 차량은 경찰 112순찰차량과 유사한 도색 및 경찰표지 등을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차량 앞면에는 「방범」 또는 「방범순찰」, 옆면에는 「○○자율방범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종합보험에 가입치 아니한 자율방범대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아니한다.
3. 경광등은 탈착식으로 방범활동을 한 경우에만 부착·활용하여야 한다.

#### 제 4 장 감독 및 포상

제14조 【관리·감독】 ① 경찰서장(이하 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수시로 자율방범대원이 근무 중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장은 자율방범대 복장 및 차량에 대하여 경찰 유사 복장·차량 발견 시 즉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 의】 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의 정례회의(반기 1회 이상)를 개최하여 방범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서장은 자율방범대원들과의 정례회의(분기 1회 이상) 및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회의 시 수렴된 사항을 관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 협력치안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 상】 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1. 범인 검거에 공이 있는 자
2. 범인 검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
3. 인명, 재산 등 피해예방 및 구조에 공이 있는 자
4. 기타 지역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다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 방범활동에 공이 있는 우수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제도적 지원】 ①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해당자에 한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 교육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구대장·파출소장은 방범대원의 범죄신고 및 범인검거 등 중요범죄 해결에 중요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의거 적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및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追  
3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2008.9.18)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현재 조직·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차량의 경우 현재 복장을 착용하되, 전 제13조의 단서에 의거 경찰 유사·복장 등은 절대 사용치 아니하고, 새로 조직하는 자율방범대는 이 규칙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

追  
3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읍면동별	계	남자자율방범대	여자자율방범대	비고
계	28	14	14	
조치원읍	8	4	4	
연기면	2	1	1	
연동면	2	1	1	
부강면	2	1	1	
금남면	2	1	1	
장군면	2	1	1	
연서면	4	2	2	봉암포함
전의면	2	1	1	
전동면	2	1	1	
소정면	2	1	1	
한솔동	0	0	0	미구성

### ※ 조치원읍 자율방범대 구성현황

- 역전 제1자율방범대
- 역전 제2자율방범대
- 죽림 제1자율방범대
- 죽림 제2자율방범대

#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

## ○ 자율방범대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운영비	상해보험	피복비	연합대 운영비	순찰차 운영	등산대회
2012	97,860	44,120	10,000	19,640	5,000	9,600	12,000
2011	80,756	43,556	10,000	2,000	3,600	9,600	12,000

\* 2012년 예산은 연기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포함  
편입된 장군면과 부강면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포함

## ○ 2011년도 운영비(야간급식비, 차량유지비) 반기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읍 면	배정액 누 계	대 수	산 출 기 초		
			배정액	야간 급식비	차량유지비
계	43,556	22개대 (남12, 여10)	21,772	22개대 16,060천원	12개대 5,712천원
조치원읍	12,572	6개대(남4,여2)	6,284	730천원×6개대 = 4,380천원	476천원×4개대 = 1,904천원
동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476천원
서 면	7,746	4개대(남2, 여2)	3,872	730천원×4개대 =2,920천원	476천원×2개대 =952천원
남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 476천원
금 남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476천원
전 의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476천원
전 동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476천원
소 정 면	3,873	2개대(남1, 여1)	1,936	730천원×2개대 =1,460천원	476천원×1개대 =476천원

## 김부유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정 조례 대비표

김부유 의원 발의 조례안	집행부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대연합대 (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활동범위) 읍·면·동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 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p>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li> <li>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li> <li>3. 상해보험 가입비</li> <li>4.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li> <li>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li> <li>2.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li> <li>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li> <li>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p>	<p>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li> <li>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li> <li>3. 상해보험 가입비</li> <li>4.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li> <li>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li> <li>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li> <li>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li> <li>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p>
---	---

<p>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p> <p>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